

영등포구의회
제16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권영식 의원 외 4인 발의】



2011. 9. 19

運 營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79호로 2011년 9월 15일 권영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11.7.14 개정·공포(2011.10.15 시행 예정)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과 일치되도록 우리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. 따라서 우리구의회 조례의 관련 조문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.(안 제6조)

- 나.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설함.(안 제7조제2항)
- 다. 감사 및 조사의 방법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 길고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므로,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간결한 표현을 인용하여 정비함.(안 제8조제1항)
- 라.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5항이 개정되어 의회의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의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더하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선서 거부의 경우가 추가·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함.(안 제8조제4항)
- 마.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해 준용할 수 있는 법률을 종전의 ‘「형사소송법」 제157조’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‘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’로 변경함.(안 제8조제6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9조 ~ 제52조

5. 검토의견

- 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. 7. 14일 개정되어 2011. 10.15일 시행 예정인

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-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.
- 안 제7조제2항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,
- 안 제8조제1항에 감사 및 조사의 방법에 관한 조문을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을 인용하여 간결한 표현으로 수정 함.
- 안 제8조제4항에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더하여 서류 미제출 및 증인 선서 거부의 경우를 추가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함,
- 안 제8조제6항에 증인 선서의 방식을 기존의 ‘ 「형사소송법」 제157조’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‘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’로 개정함.

-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기존 7일의 범위에서 9일의 범위로 늘어난 것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자료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해서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내용으로 개정한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실효성 있는 견제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바로고친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

우,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
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